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급증하는 세원 및 세입규모에 적합한 조직운영을 위해 세무과 분과를 통한 세정 서비스 향상과 전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
- 나. 「제101회 전국체전」의 준비와 예산확보, 행사기획, 시설확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며
- 다.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중복·쇠퇴 기능을 축소 및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서 신설 및 폐지(안 제7조)
- 1) 세무과 폐지 및 세정과, 징수과 신설
 - 2) 전국체전추진단 신설(한시기구)
- 나. 분장사무 신설
- 1) 경제통상국 분장사무 신설(안 제5조)
 - 탄소산업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신설
 - 지역공동체사업의 총괄·기획 및 활성화를 위한 분장사무 신설

2) 정책기획실 분장사무 신설(안 제6조)

- 지역인구정책 기획·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신설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사항을”을 “다음 사항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탄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17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지역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

제6조제2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, 제17호, 제17호의2,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, 제18호의2,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지역인구정책 기획·조정

제7조제1항 중 “세무과, 체육진흥과, 회계과를”을 “세정과, 징수과, 체육진흥과, 회계과, 전국체전추진단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“지방세정”을 “지방세 세정 및 징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부서 신설 및 업무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업무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4조(종전의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·행정처분,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획행정위원회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문화관광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홍보담당관, 총무과, 안전재난과, 새마을과, 세정과, 징수과, 체육진흥과, 회계과, 전국체전추진단, 주민복지과, 사회복지과, 가족지원과, 시민만족과, 구미보건소, 선산보건소, 평생교육원, 문화예술회관, 시립중앙도서관, 노인종합복지관,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②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③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토지정보과장, 세정과장, 선산읍장과 그 밖에 시장이 임명한 자
- 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(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)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신설·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, 부서의 장,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, 부서의 장,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경제통상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경제통상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0. (생략) <u><신설></u> 11. ~ 16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17. ~ 23. (생략)</u>	제5조(경제통상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다음 사항을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0의2. 탄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</u> 11. ~ 16. (현행과 같음) <u>17. 지역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</u> <u>18. ~ 24. (현행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)</u>
제6조(정책기획실에 두는 담당관) ① (생략) ②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12. ~ 16. (생략)</u> <u>17. ~ 19. (생략)</u>	제6조(정책기획실에 두는 담당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지역인구정책 기획·조정</u> <u>13. ~ 17. (현행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)</u> <u>18. ~ 20. (현행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)</u>
제7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, 안전재난	제7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-----

과, 새마을과, <u>세무과, 체육진흥과, 회계과</u> 를 둔다.	----- <u>세정과, 징수과, 체육진흥과, 회계과, 전국체전추진단을</u> --.
②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-----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지방세정</u> 에 관한 사항	10. <u>지방세 세정 및 징수</u> --
11. ~ 13. (생략)	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~ ④ 생략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김 태 영
	담 당 자	김 혜 진 (480-6773)